##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90 발의연월일: 2022. 8. 17.

발 의 자: 강민정·강준현·김민기

김승원 • 민병덕 • 서영석

윤영덕 • 이수진(비) • 이 탄희

최혜영 • 한준호 • 홍정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는 가사, 대인관계, 학교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들이 존재함.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을 통해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학적을 유지한 채고민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2020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이 예정된 학생 수는 12,347명에 이름.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함. 때문에, 이 학생들은 '학업 중단 학생'으로 묶여서 다뤄지며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차이에 맞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지역별로 상당한 격차의 지원을 받고 있음. 일례로 국가교육통계와 교육부 '2020년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학생 수 17만 5천여명의 광주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26억 3200만원에 달하는 한편, 학생 수가 25만 명이 넘는 대구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예산이 3200만원 수준에 불과함.

이에 국가와 교육청이 학적을 유지한 채 위탁교육을 받는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온전히 지원하도록,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표현 대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용어를 개정함과 동시에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에 포함시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 지원 시 지역 및 학교 간격차를 고려하도록 하고, 학업 중단의 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업 중단에 대해 고민하는 기간 동안 다양한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지원하도록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등).

###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 · 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들"을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고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실태조사"를 "매년 실태조사"로 하 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 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지역 및 학교 간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겪 는 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 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학습부진아 등"을 "학 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지도·감독"을 "지도·감독 및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학업 중단의 징후 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
-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7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 <u>학습부진아 등</u> 에 대한 교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
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생</u> 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u>학</u>	
<u>생들</u>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학생들(이하"학업에 어려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을 겪는 학생"이라고 한다)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	
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
	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
	힌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에
	<u>있는 학생</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2
1항에 따른 <u>학습부진아 등</u> 에	<u>학업에 어려</u>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	<u>움을 겪는 학생</u>
하여 <u>실태조사</u> 를 하여야 한다.	
	<u>매년 실태조사</u>
<u>&lt;신 설&gt;</u>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제1</u> <u>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u>에 대 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u>지원</u> 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 1항에 따른 <u>학습부진아 등</u>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 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u>학</u>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u>지도·</u>감독하여야 한다.
- ⑥학교의장은학업중단의징후가발견되거나학업중단

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
<u>이터베이스를 구축·운용할 수</u>
<u>있다.</u>
<u>4</u>
지역 및 학교 간 동등한 수준
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학업에 어려움을
<u>겪는 학생</u>
진원하여야 한
<u>다</u> .
<u>⑤</u>
한업에 어려
<u>움을 겪는 학생</u>
<u>⑥</u>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u>지도·감</u>
<u>독 및 지원</u>
<u>⑦</u> 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 로 인정할 수 있다.

①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및 충분히 생각할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 설>

⑧ 제7항에
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
7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학생이
교육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u>한다.</u>